

의안번호	2216074
의 퇴 인	정혜경 의원
회 답 일	2025. 11. 28.
추 계 번호	25A5277

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시·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에너지계획에 “지역재생에너지 자립 및 공영화에 관한 사항”을 추가할 경우 재정소요는 2027년에 5억 1,0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5억 1,000만원(연평균 1억 2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평균
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(안 제7조)	510	—	—	—	—	510	102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조(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)	○ 시·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에너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다음을 추가함(제2항) － 3의2. 지역재생에너지 자립(신재생에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규정된 자연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의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생산과 소비의 순환체계 조성) 및 공영화에 관한 사항	의무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7조(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)	○	—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개정안의 부칙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은 현재 시·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에너지계획에 “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및 공영화에 관한 사항”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한다면 추가재정소요가 발행할 수 있음
 - 현행 연구용역비 범위 내에서 개정안의 추가 항목을 포함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,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연구용역비를 추가로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함
 - 참고로, 현행 지역에너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(법 제7조제2항)
 - 1. 에너지 공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
 - 2.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
 - 3. 신·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
 - 4.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
 - 5. 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
 - 6.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·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
 - 7.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·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비용추계 대상은 “지역에너지계획의 항목 추가에 따른 연구용역비”로 함
 - 개정안에 따라 지역에너지계획에 추가하여야 하는 항목과 관련하여 유사 연구용역 사례를 참고할 때 5억 1,000만원(17개 시·도×3,000만원)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
- 유사 연구용역 사례로는 “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”(경기 화성시, 2022년, 2,628만원), “전북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 연구”(전북, 2023년, 1,792만원), “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수립”(경기 파주시, 2019년, 4,579만원) 등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(안 제7조)	510	—	—	—	—	510	102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